

2026년도 해외우수연구기관협력허브구축사업 「탐-티어 연구기관 간 협력 플랫폼 구축 및 공동연구 지원사업」 신규과제 공모

2026년도 과학기술정보통신부 해외우수연구기관협력허브구축사업의 『탐-티어 연구기관 간 협력 플랫폼 구축 및 공동연구 지원사업』 신규과제를 다음과 같이 공모하오니, 관련 절차에 따라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.

2026년 2월 10일

<주무부처> 부총리 겸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장관 배 경 훈
<전문기관> 한국연구재단 이사장 홍 원 화

I. 공모 개요

1. 사업목적

- 국내·외 최고 수준 연구기관 대상 ‘지속 가능한 협력 플랫폼’ 을 구축하여 세계 최고·최초 기술개발 및 글로벌 문제해결 지원
- 동 플랫폼을 통해 양국 연구기관 간 공동연구, 인력교류, 정보교환 활동 등을 패키지로 수행, 중장기적으로 현지 거점 구축
- ※ (대상국가) 기존에 정부·연구기관 간 협력채널을 통하여 긴밀히 협력해 온 미국, EU, 영국, 일본 등 세계 최고 수준의 과학기술 분야 선진국(연구기관)

2. 선정규모

공모 유형	연구과제
과제 수	4과제(사업단) 이내
과제당 연구비	'26년 23억원 이내
총 연구기간	총 10년(3+4+3) ※ 단계평가 예정

※ (연구과제)연구비 규모 : (1단계) 연 23억원 이내 / (2단계) 연 23억원 이내 / (3단계) 연 23억원 이내

※ 단, 1단계 1차년도 지원기간은 6개월 기준 연구비(11.5억원 이내) 지급 예정

II. 공모 세부내용

[연구과제] ※ [붙임1] 신청요강 참조

1. 개요

- 지원대상 : 국내 대학, 정부출연(연)
- 지원단위 : 사업단(컨소시엄)
 - ※ 주관/공동/위탁연구개발기관은 모두 다른 기관으로 구성
- 지원분야 : 정부 정책, 글로벌 이슈 등을 고려하여 **4대 중점 협력 분야** 제시

① 국가전략기술 분야	② 글로벌 문제해결 분야	③ 핵심 기초기술 분야	④ AI + 과학기술
12대 국가전략기술	감염병, 기후변화, 해양 오염, 재난 대비, 공공기술 해결 등	세계 최초-최고기술 지향 도전적/혁신적 연구분야	AI 활용 과학기술 혁신 가속화 및 국가난제 해결 분야

※ 위 분야 중 1개 이상 해당 시 자율적 협력 수요 발굴하여 신청 가능

※ 선정 평가 시 '지원 분야별 배분은 미고려(미선정되는 분야도 있을 수 있음)

- 지원내용 : 양국 연구기관 간 공동연구, 인력교류, 정보교환 활동을 패키지로 수행, 중장기적으로 협력 거점 구축 지원

접수 및 연구개발비 집행 계획 수립 시 유의사항

- ※ 신청기관별 '주관연구개발기관'으로 최대 2개 과제 신청 가능, 주관연구개발기관에서 승인 전 확인 필수
- ※ 연구책임자는 타 국가연구개발사업 연구책임자로 2개 과제만 추가 수행 가능
(3책 5공 적용 / 단, 신청 요강에서 제시한 '제한사업'은 중복 불가)
- ※ 참여연구원은 3책 5공(국가연구개발혁신법 시행령 제64조 연구개발과제 수의 제한) 적용 대상
- ※ 연구개발비는 '국가연구개발혁신법' 제13조, 동법 시행령 제20조 및 '국가연구개발사업 연구개발비 사용기준' 등 관련 법령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편성·집행·관리하여야 하고, 연구개발계획서 제출 시 상세 계획 기재 필수(선정평가에 반영)
- ※ 직접비 내 인건비 현금 계상 및 연구수당 집행 계획 수립시 국가연구개발사업 연구개발비 사용기준 (과학기술정보통신부 고시)에 근거한 계획 수립 필수
- ※ 간접비 계상식

○ 간접비 지급기준 = 수정직접비(직접비-현물-위탁연구개발비-국제공동연구개발비-연구개발부담비) × 기관별 간접비율 × 50%

- ※ 국제공동연구개발비를 계상하는 경우, **직접비 총액의 최대 30%까지 계상**할 수 있으며 국가연구개발사업 연구개발비 사용기준에 따라 집행

2. 신청자격 및 신청제한

□ 신청자격

★ 국내·외 Top tier 연구기관 간의 협력 플랫폼 구축이라는 사업 목적을 고려하여 신청서 내에 국내 및 해외 참여기관의 연구 수준 탁월성, 협력 참여 및 지속 의지 등 기술 필수

○ 연구개발기관의 자격(주관/공동/위탁연구개발기관 공통)

- 「국가연구개발혁신법」 제2조 제3항 나, 다, 라, 바에서 정하는 기관

혁신법 제2조(정의) 3. "연구개발기관"이란 다음 각 목의 기관·단체 중 국가연구개발사업을 수행하는 기관·단체를 말한다.
나. 「고등교육법」 제2조에 따른 학교(이하 "대학"이라 한다)
다. 「정부출연연구기관 등의 설립·운영 및 육성에 관한 법률」 제2조에 따른 정부출연연구기관
라. 「과학기술분야 정부출연연구기관 등의 설립·운영 및 육성에 관한 법률」 제2조에 따른 과학기술분야 정부출연연구기관
바. 「특정연구기관 육성법」 제2조에 따른 특정연구기관

○ 해외사업단 참여기관의 자격

- 세계 최고 수준의 과학기술 분야 대학, 출연연, 국/공립 연구기관

※ 2단계 이후 연구내용 및 전문가 검토 결과 등에 따라 기업참여 고려 가능

○ 연구책임자의 자격 및 요건

- 연구책임자는 국내 주관연구개발기관 소속으로 참여연구원 총괄·관리가 가능한 연구자이어야 함

- 「국가연구개발혁신법」 제6조(연구개발기관의 책임과 역할) 및 제7조(연구자의 책임과 역할)에 의거 요건을 갖춘 자

혁신법 제6조(연구개발기관의 책임과 역할) 연구개발기관은 이 법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성실히 이행하여야 한다.

1. 연구개발 역량 강화 및 연구개발의 효율적인 추진을 위하여 노력할 것
2. 소속 연구자가 우수한 연구개발성과를 창출할 수 있도록 연구지원에 최선을 다할 것
3. 소속 연구자의 고유의 연구개발 외 업무 부담이 과중하지 아니하도록 배려할 것
4. 소유하고 있는 연구개발성과가 신속·정확하게 권리로 확정되고 효과적으로 보호될 수 있도록 노력할 것
5. 소유하고 있는 연구개발성과가 경제적·사회적으로 널리 활용될 수 있도록 노력할 것
6. 연구개발성과 창출·활용에 기여한 소속 연구자에게 보상하도록 노력할 것
7. 소속 연구자가 제7조에 따른 책임과 역할을 다할 수 있도록 필요한 조치를 할 것

혁신법 제7조(연구자의 책임과 역할) ① 연구자는 이 법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성실히 이행하여야 한다.

1. 자율과 책임을 바탕으로 성실하게 국가연구개발활동을 수행할 것
2. 국가연구개발활동을 수행할 때 도전적으로 자신의 능력과 창의력을 발휘하되 그 경제적·사회적 영향을 고려할 것
3. 연구윤리를 준수하고 진실하고 투명하게 국가연구개발활동을 수행할 것

② 연구개발과제를 총괄하는 연구자(이하 "연구책임자"라 한다)는 그 연구개발에 참여하는 연구자가 연구개발 활동에 전념할 수 있도록 배려하여야 한다.

○ 참여연구원의 자격

- (전임연구원) 국내외 대학 소속 교원 또는 정부출연연구기관 선임연구원(정규직) 이상
- (비전임 연구원) 학부생 및 석·박사 과정생, 학·석·박사급 연구원

□ 신청 제한

○ (기본 원칙)

- 신청기관별 ‘주관연구개발기관’ 으로 최대 2개 과제 신청 가능
- 탐티어 사업 신청 및 참여자는 해외우수연구기관협력허브구축사업 내 모든 내역사업*으로 중복하여 신청 또는 참여 불가

* 탐티어(23억원, 총괄과제 포함), 글로벌 연구네트워크 확산(3억원/6억원/14억원 유형)

- 2024년 공모 선정과제 4개 컨소시엄과 동일한 형태* 과제 참여 불가

* 계속과제 수행 컨소시엄 : 서울대-스탠포드대, KAIST-MIT, IBS-RIKEN, 화학연-Rega

- (계속과제 수행자 신청 제한) 아래의 제한사업을 수행 중인 연구책임자는 2026년도 Top-tier 신규 과제 연구책임자로 신청 및 수행 불가

제한 사업
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▶ 과학기술정보통신부 기초연구사업(리더연구, 선도연구센터, 기초연구실) ▶ 교육부 이공분야 학술연구지원사업(대학중점연구소/글로벌랩) ▶ 교육부 대학기초연구소(G-LAMP) 사업 및 과제당 연 10억 원 이상의 국가연구개발사업 과제/사업

- (신규 신청 제한) 상기 제한사업의 연구책임자로 동시 신청한 경우 탐티어 사업 최종 선정(사업추진위 심의 기준) 이후에는 타 과제 신청 철회 필수

- (유사 과제 신청 제한) 기존에 국가지원 유사 협력과제를 수행하거나 참여하고 있는 경우는 신청을 지양하고, 신청하고자 하는 연구계획과 기 지원된 국가연구개발과제(타부처 포함)와의 유사성을 과제 신청 전 반드시 개별 확인

※ 유사과제 검색 방법 : www.ntis.go.kr 로그인 → 과제참여관리 → 차별성검토

- (참여제한) 국가연구개발사업 참여제한 중인 자는 신청할 수 없음

- 단, 신청 마감일 전일에 참여제한이 종료된 자는 과제 신청 및 수행 가능

- (연구개발과제 수의 제한) 연구자가 동시에 수행할 수 있는 연구개발과제는 최대 5개 이내로 하며, 이 중 주관연구개발기관의 연구책임자로 수행할 수 있는 과제 수는 동 사업 포함 최대 3개임

- ※ 주관연구개발기관 연구책임자의 경우 '책', 공동연구개발기관 연구책임자 및 참여연구원은 '공'
- ※ 단, 수행 중인 사업이 신규과제 신청마감일(2026.4.20.)을 기준으로 6개월 이내(2026.10.20.)에 최종 종료(연차 및 단계 종료 아님)될 경우 신청 가능

○ (과제구성 제한) 동일과제 내 주관연구개발기관, 공동연구개발기관, 위탁연구개발기관은 모두 다른 기관으로 구성해야 함

- ※ 동일기관 여부 : 법인등록번호 기준으로 판단(협약 시, 법인인증서 사용), 사업자등록번호는 다르나 법인등록번호가 같은 기관의 경우 동일기관으로 협약체결 불가

3. 신청기간 및 제출서류

□ 신청기간

구 분	내 용
연구책임자 신청 기간(신청마감일)	2026.2.10.(화) ~ 2026.4.20.(월) 18:00:00까지
주관연구기관 검토·승인기간	2026.2.10.(화) ~ 2026.4.22.(수) 18:00:00까지
신청 절차	연구자 접수 ▷ 주관연구기관 승인 ▷ 신청 완료

□ 제출서류

신청 시	협약 시
① 연구개발계획서(신청용) ② 신청자격 적정성 확인서 ③ 개인정보·과세정보 제공·활용 동의서 및 연구윤리 준수서약서 ④ 신청 마감일 기준, 수행 중인 과제 및 신청 중인 신규 과제 현황 ⑤ 해외연구기관과의 협력문서 전문 (Letter of Intent(Lol) 등) ⑥ 교비 대응자금, 지자체 대응자금, 참여기업 부담금 지원 협약서(해당 시)	① 연구개발계획서(협약용) ② 개인정보·과세정보 제공·활용 동의서 및 연구윤리 준수서약서 ③ 신규 참여연구원 채용 확인서(해당 시) ④ 3천만원 이상 1억원 미만 장비 도입계획 시 연구시설장비 심의요청서(해당 시) ⑤ 해외연구기관과의 협력문서 전문(MoU 등) ※ 협력문서 주요내용 : 협력 플랫폼 구축을 위한 연구공간 마련, 인력교류(상호 파견), 지식재산권 등 연구성과 배분, 국제공동연구개발비 산정 등 ⑥ 교비 대응자금, 지자체 대응자금, 참여기업 부담금 지원 협약서 (해당 시) ※ 국제공동연구개발비 집행 전 해외 협력기관과의 국제공동계약서 제출 필수

4. 평가방법

□ 평가절차



※ 구체적인 사항은 지원과제 규모 및 분야 등을 고려하여 '평가계획' 수립 시 확정

□ 선정평가

구분	관련 항목	선정평가 기준(안)
연구의 탁월성	연구분야·목표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• 한국 및 상대국의 강점 분야 • 연구의 명확한 목표·방향 설정
	연구내용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• 세계적 수준 획기적인 연구성과에 대한 기대 • 사회적인 영향력(글로벌 문제 해결의 경우) • 사업 종료 후 발전 가능성
	연구방식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• 국제공동연구 추진계획
협력 플랫폼 구축	플랫폼 운용 계획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• 기존 상대방 기관과의 네트워크 구축 정도 • 세미나, 심포지엄 등 연구기관 및 연구자 간 정기적인 협의 채널 운영계획의 구체성 • 양국 기관 간 석박사, 포닥 등 연구자 교류
	플랫폼 리더에 대한 평가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• 대상분야에서 세계적으로 우수한 연구 실적 • 세계 우수 연구자에 대한 초빙 역량, 플랫폼 운영을 위한 리더십
	기관, 연구자 평가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• 대상 분야에서 국내기관, 연구자의 연구 실적 • 대상 분야에서 해외기관, 연구자의 연구 실적 • 국내기관의 참여·지원 의지 • 해외기관의 협력 참여 의지(매칭, 연구자 파견·초빙 등)

※ 1차~2차 선정평가 기준을 공통으로 하되 가중치를 달리 두어 평가

□ 차별성 검토

- 국가과학기술지식정보서비스(NTIS, www.ntis.go.kr) 및 연구개발과제평가단을 통해 신청과제에 대한 차별성 검토

※ 관련 규정 : 국가연구개발혁신법 시행령 제12조 제3항

5. 선정과제 지원조건

구분	내용	이행조건	점검 시기
① 공동 연구	협력연구 공동 기획, 수행 등을 통한 파급력 있는 우수 연구성과 도출	1) 세계 최고·최초 수준의 연구성과/기술개발 (국제공동연구 논문 발표)(필수) - 국내외 사업단 연구자가 교신저자/주저자/공동저자로 동시 참여 ※ 인정 기준 : 사사문구 표기 시에만 성과로 인정 2) 국가·사회·글로벌 문제해결에 기여(해당 시) 3) 국제공동특허 출원/등록(권장)	2단계 종료 시
② 인력 교류	국내 연구진 파견, 해외 연구진 유치 등 양방향 교류	4) Out-bound(파견) - 양국 기관 간 석박사, 박사후연구원 등 연구자 교류(필수) - 해외 탐 연구팀에 국내 박사후연구원 파견(1~2년) + 국내 복귀 연구비 지원(1~2년)(필수) ※ 상기 포함 총 5~10명/연, 각 2개월 이상(권장) 5) In-bound(초청) - 탐-티어 잠재력 있는 해외연구자 장·단기 유치(체재비·연구비 지원)(필수) 6) 공동학위, 방문교수(연구연가) 제도, 등 활용(권장)	매 단계평가 시
③ 정보 교환	양 기관 연구자 간 신뢰 기반 구축, 세부 연구과제 탐색·도출, 연구문화 교류를 위한 세미나·포럼 등 개최	7) 국내-해외 사업단 간 각종 글로벌 협력 프로그램 운영(필수) - 기술 교류회, 공동 세미나/워크숍, 컨설팅 등	매 단계평가 시
④ 협력 거점	기관 간 공동연구, 인력교류 등을 지속적·상시적으로 추진 가능하도록 국내-해외기관 공동연구센터 등 협력거점화	8) 국내 및 해외 현지 협력 플랫폼 구축(필수) - 국내 및 해외 현지에 공동연구센터를 구축하여 지속 운영(부설기관 설립 권장) ※ 국내-해외 연구진 공동연구 공간(분야에 따라 온라인 플랫폼 포함) 등(2차년도 이내) ※ (국내)사업단 지원팀 운영(1차년도 이내) 9) 지속가능한 협력활동 - 연구과제 공동수주, 자체펀드 조성 등 확보 노력* * 성과(실적 및 3단계 계획) 정도에 따라 3단계 연구비 차등 또는 단계 탈락 가능 - 해외 연구기관과의 연구 데이터 및 시설·장비 등 인프라 공유체계 구축 노력	2단계 종료 시

6. 추진 일정(안)

일정	내용
2026.2.10.(화) ~ 2026.4.20.(월) 18:00:00	연구책임자 신청기간 ※ (2월 말) 해외우수연구기관협력허브구축사업 신규과제 공모 사업설명회 개최 예정
2026.2.10.(화) ~ 2026.4.22.(수) 18:00:00	주관연구개발기관 검토·승인기간
2026.5월~6월	선정평가
2026.6월 중	예비선정 공고 및 이의신청 접수, 심의
2026.6월 중	추진위원회 심의 및 선정과제 확정
2026.6월 말	최종 선정과제 공고 및 협약체결
2026.7.1.	신규과제 연구개시

※ 향후 일정은 사업 추진 상황에 따라 달라질 수 있음

7. 기타 안내사항

□ 사업 신청 시 유의사항

- 응모자가 선정예정 과제 수 이하인 경우 재공고 가능함
 - ※ 단, 장관이 연구개발사업 추진의 시급성이 있다고 결정한 경우에는 예외로 함
- 연구개발계획서 및 증빙자료에 허위사실 기재 시 선정취소 등 제재 가능
- 마감일 이후 신청서 제출, 제출서류 미비, 타 과제와의 연구내용 중복, 신청 자격 부적격 등의 경우에 평가에서 제외 가능
- 최소 선정기준 미달 등에 따라 지원과제를 선정하지 않을 수 있음
- 평가위원회, 추진위원회 의견 등에 따라 과제 목표 및 내용, 연구비, 연구기간 등이 조정될 수 있음
- 평가결과, 정부 연구비 사정 등에 따라 연구비 증감, 지원중단, 조기종료 등 가능
- 각종 증빙자료의 기산일은 공고일 기준임(단, 참여제한의 경우 신청마감일 전일을 기준으로 함)
- 선정 후 주요사항(주관·공동 연구개발기관) 변경을 원칙적으로 금지함
- 본 공고문은 추후 공고 기간 내 수정사항이 발생할 수 있으며 수정사항이 발생할 경우 별도 공지 예정

○ 선정과제는 본 사업의 전략계획서 상 성과지표 및 탐티어 연구단 사업관리 지표*를 참고하여 과제 수행 필수

* 단계평가 시 반영 가능

○ 연구책임자는 「국가연구개발혁신법」 제7조, 동법 시행령 제9조 제3항에 따라 협약 시 제출하는 연구개발계획서 내 국외수혜* 현황정보**를 포함하여야 하고, 과제 수행 중 국외 수혜 발생일로부터 30일 이내(권고) 현행화(IRIS 활용)

* 국외수혜 : 외국 정부·기관·단체 등으로부터 재정적·행정적(연구과제, 인력, 장비, 시설) 지원 및 강의·자문·검직 등으로 대가를 받는 사항(단순 문의·제안·논의 및 종료사항 미포함)

** 지원·지급 출처, 사유, 기간, 내용, 현재 수행 중인 연구개발과제와의 관련 여부

혁신법 시행령 제9조(연구개발과제 및 연구개발기관의 공모 절차) ③ 연구개발계획서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.

8. 연구책임자가 연구개발기간 동안 외국의 정부·기관·단체 등으로부터 받는 행정적·재정적 지원이나 노무 또는 자문 등을 제공하고 받는 대가에 관한 사항

○ 한국연구재단 지원과제의 신청자 및 수행자는 연구개발계획서 및 연차/단계 /최종보고서 작성 과정에서 생성형 AI 도구를 작성한 경우,

① 해당 자료의 적절한 위치*에 AI 도구 사용내역을 기술(권장)

* 「생성형 인공지능(AI) 도구의 책임 있는 사용을 위한 권고사항」[개정판](25.9, 한국연구재단) 참조

▶ 표기 항목(예시) : AI 도구 회사연도, AI 도구 이름(버전, 출시일자/활용일자), 자료 유형*, URL, 활용방법 등

* 자료 유형 : 대형언어모델(LLM), 소프트웨어(SPSS, MATLAB 등 통계나 수치분석 도구 등) 같은 AI 도구의 유형

② 연구자가 직접 출처를 검증하여 AI 활용 자료의 신뢰성 및 타당성을 확인 하고 연구윤리 위반 가능성을 점검(필요시 수정·보완)

※ AI 사용 시 발생할 수 있는 표절, 위조, 변조 등 다양한 연구진실성 위반 사례 예방 위함

③ AI 도구 활용으로 중요한 연구정보*가 유출되지 않도록 주의

* 연구정보 : 연구데이터, 과제정보 및 수행자의 개인정보

- 연구개발계획서 등 각종 연구자료를 AI 도구에 업로드하여 연구정보 유출이 발생한 경우, AI 도구를 활용한 연구자에게 책임이 있음

□ 평가 및 기획 적극 참여(의무사항)

○ 연구자는 평가 및 사업기획에 적극적으로 참여하여, 선진화된 평가·기획 문화 정착에 기여하여야 함

□ 연구개발과제의 성실 수행

- 연구개발과제에 참여하는 연구자는 연구노트(연구개발과제 수행과정과 연구개발성과를 기록한 자료)를 작성하고 관리하여야 함

국가연구개발사업 연구노트 지침

제8조(연구노트의 작성) ① 연구개발기관의 장은 소속 연구자가 연구노트를 작성하도록 관리하여야 한다.

- ② 연구노트의 작성에 관한 사항은 연구개발기관의 장이 자체규정으로 정한다.
- ③ 제1항에도 불구하고 연구개발과제의 협약 당사자(법 제4조 제1호에 따른 다른 법률에 따라 직접 설립된 기관의 기본사업의 경우에는 해당 기관의 장을 말한다)는 개인사업자, 창업초기기업 등 연구노트를 관리하기 어렵다고 인정하는 연구개발기관의 경우나, 사전조사·기획평가, 연구개발과제의 조정·관리, 인문·사회분야, 인력양성, 기반구축 등 연구노트 작성의 필요성이 크지 아니하다고 인정하는 연구개발과제의 경우에 법 제12조제4항에 따른 연차보고서 또는 제12조 제5항에 따른 최종보고서(같은 항에 따른 단계보고서를 포함한다) 등의 작성을 연구노트 작성으로 볼 수 있다.

□ 논문 사사표기 안내

- 연구성과의 학술지 논문 게재 시, 해당 논문에 사사를 표기해야 함

- ▶ **국문표기** : 이 성과는 정부(과학기술정보통신부)의 재원으로 한국연구재단의 지원을 받아 수행된 연구임 (IRIS 과제번호).
- ▶ **영문표기** : This work was supported by the National Research Foundation of Korea(NRF) grant funded by the Korea government(MSIT) (IRIS 과제번호).
 - ※ MSIT : Ministry of Science and ICT
 - ※ 성과는 논문, 특허 등 실제 성과 명칭으로 대체 사용 가능

□ 관련 법령, 규칙, 매뉴얼 등 조회 방법

- 범부처 연구비통합관리시스템 홈페이지(<https://gaia.go.kr>) 접속, 홈페이지 [자료실]에서 법·규정·규칙 및 연구·연구비 관리 매뉴얼 조회 가능
 - 법·규정·규칙 : 「국가R&D연구비관련 법·규정」 → ‘공통 법·규정’ 또는 ‘과학기술정보통신부(한국연구재단)’ 으로 확인
 - 연구·연구비 관리 매뉴얼 : 「연구·연구비 관리 매뉴얼」 클릭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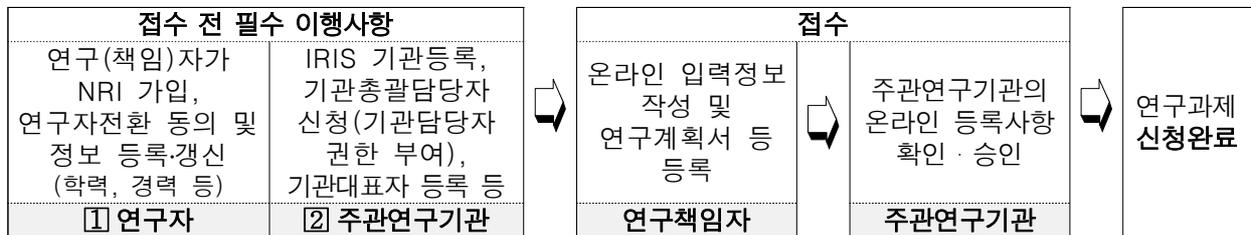
III. 신청방법

□ 온라인 신청(IRIS)

▶ 2026년도 탐 티어 연구기관 간 협력 플랫폼구축 지원사업은 신규과제 접수는 기존 한국연구재단의 e-R&D를 대체하여 한국과학기술기획평가원(KISTEP)이 운영하는 IRIS*(<https://www.iris.go.kr>)를 통해 과제신청, 평가 및 관리업무를 진행합니다.

* IRIS(Integrated R&D Information System): 각 부처 및 전문기관별로 운영하고 있던 시스템을 하나로 통합한 범부처통합연구지원시스템

- 범부처통합연구지원시스템(IRIS, <https://www.iris.go.kr>)에 연구책임자가 로그인하여 온라인 입력정보 작성 및 연구계획서 등 탑재 후 주관연구기관 확인·승인



※ 접수 전 소속기관의 연구관리 담당자에게 주관연구기관 승인 가능 여부를 반드시 확인 요망

▶ IRIS를 통한 과제신청을 위해 접수 전 필수 이행사항이 있으니 과제신청에 문제가 없도록 사전에 준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.

※ 세부내용은 [별첨(매뉴얼)1-1](연구개발과제 접수 전 필수 이행사항(KISTEP IRIS운영단)) 및 [별첨(매뉴얼)1-2] (IRIS 회원가입(연구자 전환) 및 연구자정보 등록 매뉴얼) 참조

① (연구자) ① IRIS 회원가입, ② IRIS 내 NRI(국가연구자정보시스템)로 이동하여 연구자전환 동의(국가연구자번호 발급), ③ NRI 내 학력/경력* 및 주요 연구수행 실적** 정보 등록 필수

* 경력정보에서 근무(소속)부서 등록 필수

** 최근 5년간 수행완료 과제, 수행 중/신청 중 과제 목록 작성

※ ① 및 ②: 연구책임자 포함 참여연구자 전원 필수(학생인건비 통합관리 기관의 학생연구자는 제외), ③: 연구책임자만 필수

② (주관연구기관) IRIS 기관등록, 기관총괄담당자 신청(기관담당자 권한부여), 기관대표자 등록 등

※ 기관대표자 및 기관(총괄)담당자도 IRIS 회원가입 및 연구자전환 동의(국가연구자번호 발급)가 필수이며, 대표자 정보 미등록 시 연구자가 과제접수를 완료할 수 없으므로, 반드시 신청기간 시작 전까지 필수 이행사항 조치 필요

< 주관연구기관 선택 유의사항 >

※ 세부내용은 [별첨(매뉴얼)1-3(주관연구기관 선택 및 승인권한 관련 안내)] 참조

- 과제신청 시 주관연구기관은 <00대학교 산학협력단>이 아닌, <00대학교>로 신청요망

- <00대학교>의 기관정보(기관대표자 등록, 기관총괄담당자 신청, 기관담당자 승인권한 부여 등) 등록 필수

- 승인권한은 산학협력단 기관담당자가 산학협력단 과제뿐만 아니라 본교명(00대학교)으로 신청한 과제까지 모두 승인 가능

※ 현재 <00대학교 산학협력단>으로만 기관정보(대표자 및 기관총괄담당자 등)가 등록되어 있고, 접수마감까지 시간이 촉박하여 <00대학교>로 정보를 변경하여 신청하기가 어려울 경우 <00대학교 산학협력단>으로도 신청가능

▶ IRIS 문의처: IRIS 콜센터 1877-2041 또는

IRIS 홈페이지>알림·고객>시스템·서비스문의>사용문의 게시판 활용

IV. 문의처

- (온라인 입력 및 제출 시스템 관련 문의) IRIS 콜센터 1877-2041
- 제도·정책 관련 문의 : 과학기술정보통신부 국제협력총괄담당관(044-202-4332)
- 사업신청 관련 문의 : 한국연구재단 국제협력본부 국제협력총괄팀
(02-3460-5681/seonghui@nrf.re.kr)

- 붙임 1. 2026년도 해외우수연구기관협력허브구축사업(탑-티어 연구기관 간 협력 플랫폼
구축 및 공동연구 지원사업) 신규과제 공모안내(세부사업 신청요강 등)
2. 공고문 첨부자료(연구개발계획서 등 양식)